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

(최 동 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0-8
----------	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0년 2월 일

발 의 자: 최동철, 이충숙, 이의걸, 김선경  
정정희, 박성호, 김성한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대기질 개선을 통해 구민 생활을 쾌적하게 하기 위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.(안 제1조)
- 나. 환경친화적 자동차,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.(안 제2조)
- 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.(안 제3조)
- 라.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

을 규정함.(안 제4조)

마.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매,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.(안 제5조~7조)

바.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8조)

사.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.(안 제9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10조, 제11조, 제11조의2, 제11조의3, 제12조, 제15조

나. 협조부서: 녹색환경과

다. 입법예고: 2020. 2. 예정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환경친화적 자동차”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.
2. “수소연료공급시설”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보급시행계획 수립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
2.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
3.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동력을 충전

하기 위한 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제5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)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강서구의 출자·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6조(충전시설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충전시설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(운행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홍보 및 교육 등) ①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주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8조(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·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수소연료생산자등"이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<개정 2018. 3. 20., 2018. 12. 31.>

1. 수소연료의 생산·공급·판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
2.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·조사
3. 민간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촉진 지원
4.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24.]

제10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 5. 24.]

제11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) ① 시·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(標識)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  
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11. 5. 24.]
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  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  
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 
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 
한다.

1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
2. 공동주택
3. 특별시장·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, 특별자치  
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
4.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 
있는 건물·시설 및 그 부대시설

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 
대상시설의 규모,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 
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  
를 마련할 수 있다.

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

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18. 3. 20.>

1. 전기자동차

2.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

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8. 3. 20.>

⑥ 시·도지사는 교통,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3. 20.>

[본조신설 2016. 1. 27.]

제11조의3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하는



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"임대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,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8. 12. 31.]

제12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 5. 24.]

제15조(업무의 위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3. 20.>

1.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
2. 제8조,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
3.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
[전문개정 2011. 5. 24.]

